

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육성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5. 8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2014동계올림픽 유치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「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」와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『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』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4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. (안 제2조)
- 나. 군수는 위원회의 설립·운영 및 2014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)
- 다.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공유재산의 대부, 소속공무원의 파견,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)
- 라. 군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처리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7조)
- 마.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. (부칙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필요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필요(6.4~6.24, 제출된 의견 없음)
- 마. 규제개혁심사 : 필요없음

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육성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설립된 "2014평창동계 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"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지원·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립·운영)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 군수는 위원회의 설립·운영 및 2014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(이하 "2014동계올림픽"이라 한다)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군유재산의 대부)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.

제5조(공무원의 파견)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행정지원) 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·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권한의 위탁) 군수는 2014 동계올림픽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- 제14조 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 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- 제24조 (공공기관의 범위 등)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- 제30조의4 (파견근무)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·다른 지방자치단체·국가기관·공공단체·정부투자기관,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□ 지방공무원임용령

- 제27조의2 (파견근무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 - .1.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·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

□ 지방자치법

- 제95조 (사무의 위임 등)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